

#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채유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4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5월 25일  
발 의 자: 채유미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기덕, 김재형, 김제리,  
김태수, 서윤기, 이병도,  
이영실, 전석기, 황규복  
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형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구성된 서울시 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조례에 규정하고,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”란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의함(안 제2조 제2항 신설).
- 나.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제4호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“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”란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

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~ ③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④ “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”란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
제4조(지원 범위) ① ~ ③ (생 략)	제4조(지원 범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④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
④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⑤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문서번호

2022040100000002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채유미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류동균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2.04.01

회신일 : 직접입력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###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안 제2조 제2항의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“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”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4호를 신설하여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
(제3조제1항제2호)

-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 제4조 제4호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비용의 발생 빈도, 시기, 비용발생 형태와 규모 추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 곤란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류동균
	☎ 02-2180-7952
	e-mail : rooster7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